

3. 所得稅法中改正法律(案) 再立法豫告

財政經濟院公告 第1995-72號 1995. 9. 13

1. 개정취지

채권등 유가증권을 만기일 전에 발행금융기관등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, 여성인력등 가사인력의 산업인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공제를 도입하며,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의 범위에 일시소득을 신설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부동산 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며 기타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채권등 유가증권을 만기일 전에 발행금융기관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.
- 나.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, 취업여성근로자 또는 남성독신근로자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허용하여 이들 인력의 취업을 지원함.
- 다. 현재 이자·배당·부동산임대·사업·근로·기타소득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소득을 신설하여, 거주자가 서화·골동품이나 산업재산권등을 양도하고 얻는 이익을 일시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.

- 라.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%로 인하함.
- 마.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·처리하여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양도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되, 1가구 1주택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등기전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.
- 바.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전 세무서에 사전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10%에서 15%로 상향조정하도록 함.
- 사. 이자·배당소득 등의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며, 지연제출가산세제도는 폐지하고 소정기한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미제출 가산세를 2% 인하하여 기간 경과후 즉시 적용하도록 함.
- 아. 징세행정비 및 납세협력비용등 그동안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,000 원으로 상향조정함.

3. 의견제출

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종)를 재정경제원장관(참조 : 소득세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